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시 보유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지방세입 납입 근거 마련〉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5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일시 보유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지방세입 납입 근거 마련 (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6조의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3.

다. 회 부 일 :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II. 검토의견

1. 일시 보유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지방세입 납입 근거 마련 (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6조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고금 정의 - 국가가 징수한 <u>지방소비세</u> 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제2조제1호나목)	○ 국고금 정의 - 국가가 징수한 <u>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u> 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제2조제1호나목)
○ 국가 징수 <u>지방소비세</u> 의 납입 (제16조의2)	○ 국가 징수 <u>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u> 의 납입(안 제16조의2)
	부칙
	○ 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방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장은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에 따른 지방교육세¹⁾ 및 지방소비세를 징수하게 됨. 또한 「지방세법」은 세관장이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및 지방소비세의 납입을 규정하고 있음²⁾.

1) 「지방세법」은 담배소비세의 납부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1만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함

2) 「지방세법」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⑥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해외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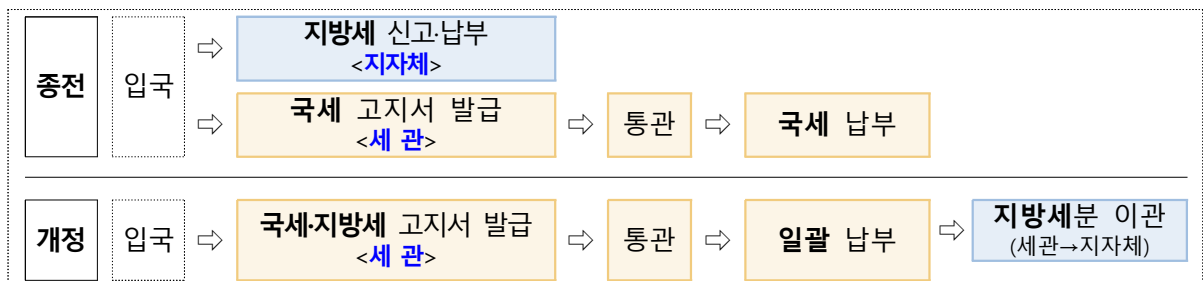
연도	고지건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세액 합계
2021	880	35	15	50
2022	1,367	165	73	237
2023	6,226	372	163	535
합계	8,473	571	251	822

자료: 관세청

하지만 「국고금관리법」은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지방소비세만을 국고금으로 정의하고, 납입의무 역시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담배소비세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입으로의 납입의무 역시 규정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남.

또한,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한 경우 담배 관련 세금의 신고·납부를 세관장으로 일원화 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2015.12.29.)에 따른 조세 납부 방식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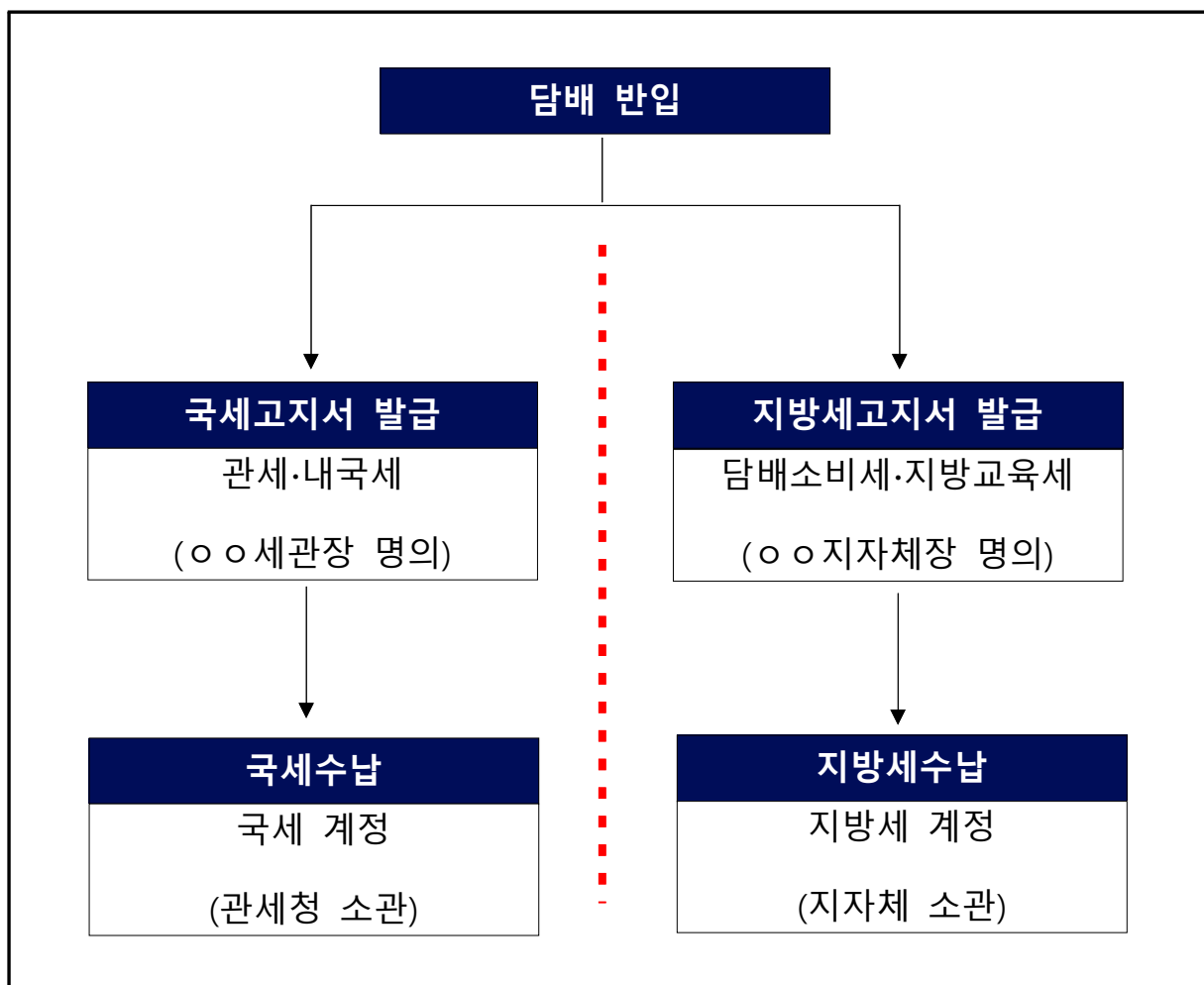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지방세법」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납입한다.

현재 세관장으로 일원화되어 이루어지는 담배 관련 세금의 신고와 달리 납부는 「국고금관리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별도 고지서를 통해 세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국고금관리법 미개정으로 인한 현행 수납 체계]



자료: 관세청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역시 국고금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지방세입으로의 납입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이를 통해 「지방세법」과 「국고금관리법」 사이에 나타

나고 있는 법률 간 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와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세관장의 담배소비세 부과지에 관한 「지방세법」 제60조제6항만을 인용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도 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60조제5항 또한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³⁾.

한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을 국고금에 포함시키고 세관장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직접 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고계정을 설치하고 새로운 징수시스템을 개발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지출⁵⁾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담배 관련 지방세의 국고 납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방세의 신

3) 「지방세법」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④ (생략)

⑤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지할 수 있다.

4) 관세청에서 담배소비세등 지방세 수납을 위한 별도 징수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관련 예상편성 및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2025년 12월 1일로 정하고 있음

5) 관세청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징수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약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고납부 절차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 역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라. (생략) 2. ~ 4. (생략)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60조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 ----- 다.·라.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제60조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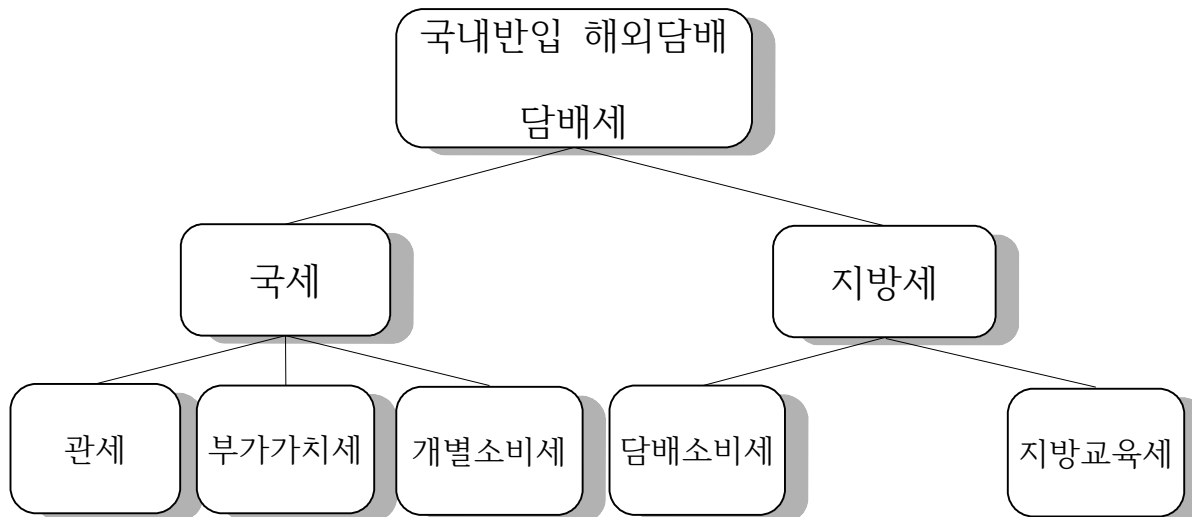
문의처

02)6788-5150

참고 1

국내 반입 해외담배 조세 구조

□ 조세 구조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징수

참고 2

국내 반입 해외담배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실적

□ 국세 부과실적(여행자휴대품/국제우편물)

(단위: 백만원)

구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세액 합계
2021년	39	16	20	74
2022년	113	52	113	278
2023년	180	86	248	514
합 계	332	153	381	866

□ 지방세 부과실적(여행자휴대품/국제우편물)

(단위: 백만원)

구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세액 합계
2021년	35	15	50
2022년	165	73	237
2023년	372	163	535
합 계	571	251	822

주: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납입 받게 되므로 부과실적 미포함

참고 3

국내 반입 해외담배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 담배소비세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쥘런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제3종 엽쥘런	1그램당 103원
	제4종 각런	1그램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쥘런형: 20개비당 897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364원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세율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43.99%

○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세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25.3%

○ 관세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 호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1	10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2401	20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2401	30	담배 부산물	20
2402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퀄런 (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	10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담배 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2402	20	퀄런(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2402	90	기타	40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 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 (essence)	
2403	1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	11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0
2403	19	기타	40
2403	9	기타	
2403	91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1. 판상엽(板狀葉)	32.8
		2. 기타	40
2403	99	기타	40
2404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 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 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 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2404	1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2404	11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40
2404	12	기타(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2404	19	기타	
		1. 담배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2. 기타	8
2404	9	기타	
2404	91	경구(經口)용	8
2404	92	피부 투여용	8
2404	99	기타	8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	10%

○ 개별소비세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쥘런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제3종 엽쥘런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런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쥘런형: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